

# 실시간 예상오류 검증기준 변경사항 (2020. 9. 1. 적용)

## □ 예상오류 선별대상 수입종류

신고서 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수입종류	11,21,13,29,32,36,15,34,28,17,20,22,23,16,19,25	11,21,13,32,36,15,34,28,17,20,22,23,16,19,25	29(원료과세) 제외

## □ 예상오류 선별기준

구분	HS부호	신고서 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	공통	품명	OTHER 단독기재	기준삭제	(OTHER 단독기재 시 신고서 접수 안 됨)
2	공통	거래품명	OTHER 단독기재	기준삭제	(OTHER 단독기재 시 신고서 접수 안 됨)
3	공통	요건비대상 사유	대상아님, 해당없음, 해당사항 <sup>√</sup> 없음, 비대상 기재	대상아님, 해당없음, 해당사항 <sup>√</sup> 없음, 비대상, 해당 <sup>√</sup> 없음, 해당사항없음 기재	해당 <sup>√</sup> 없음, 해당사항없음 추가
4	9404.21-0000 9404.29-0000	모델규격	VOLT: 미기재	표준품명이 전기식의 것(01)일 경우 VOLT: 미기재	표준품명이 전기식의 것(01)에 한하여 기준적용
5	8414.59-9000 8543.70-9090 8544.42-2090	모델규격	VOLT: 미기재	기준삭제	
6	8421.21-1000	모델규격	VOLT: 미기재	기준삭제	
7	3824.99-9090 외 54개	성분	미기재	% 미기재	“%” 미기재시 예상오류통보

※ <1>, <2>의 경우는 2020. 9. 9.부터 적용되며, 품명 또는 거래품명을 OTHER 로만 기재할 경우 수입신고서 접수 불가